제2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9월 10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0 - 79

나. 제 안 자: 김현희 의원 외 11명

다. 제안일자: 2020년 8월 19일

라. 회부일자: 2020년 8월 21일

2. 개정이유

신청사건립추진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안 제4조제2항 제2호 라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제56조. 제58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2

-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2020.8.20. ~ 2020.8.24.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2020년 5월 19일 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의소관 위원회를 정하기 위함.

나.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부구청 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획, 예산 관련 사 항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므로 위원회 업무소관 사항 을 감안 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칙을 통해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의 효력과 동일 하게 위원회 소관 기간을 정한 것과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약 3개월 간 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관을 정한 것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